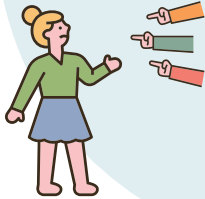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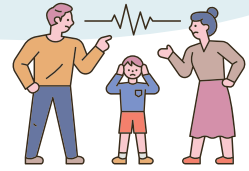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사례 Q&A



# 아동행복 지금바로 LAW



# CONTENTS



## 아동학대란?

<b>알아보기</b>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6
Q1. 아동학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8
Q2.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한 두 대 정도 때릴 수도 있지 않나요?	10
Q3. 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11



## 사례로 알아보는 아동학대

<b>알아보기</b>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입니다.	14
<b>알아보기</b>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알아차리기	15
Q1. 아이가 있을 때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요?	16
Q2. 불일이 있으면 아이를 두고 외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7
Q3. 화가 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부숴어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19
Q4. 남편이 미워서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20
Q5. 아이 버릇을 제대로 고치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훈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1
Q6. 남편이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그냥 뇌뒀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나요?	22
Q7. 아이에게 함께 죽자는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요?	23



Q8. 아이의 뺨을 딱 한 번 때렸는데, 지속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24
Q9.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주고 춥게 지내도록 한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25
Q10.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학교에 안보내도 되나요?	27
Q11.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요?	28
Q12.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머리와 몸을 누르는 정도는 재우기 위한 것이니까 학대는 아니지요?	29
Q13.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장난을 쳐서 아이의 볼을 잡았는데, 손톱자국이 남았어요.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학대로 볼 수 있나요?	30
Q14.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기에 훈육을 위해 교구장 위에 아이를 앉혀놨어요. 훈육을 위한 것인데 학대가 될 수 있나요?	31
Q15.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안 좋은 버릇을 고쳐주려고 낮잠 시간에 자는 대신 서서 반성하도록 한 것은 훈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2
Q16.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이들 낮잠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33
Q17.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 교실 밖 복도에 있도록 하는 것도 안 되나요?	34
Q18.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주려고 엉덩이를 볼펜으로 쿡쿡 찔렀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35
Q19. 다른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안되나요?	36
Q20. 수영강사가 호흡법을 알려주면서 아이를 강제로 물속에 넣은 것은 강습을 위한 것 아닌가요?	37
Q21. 피아노 학원에서 박자를 맞추도록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쳤는데, 교습을 위한 것 아닌가요?	38
Q22. 통학버스 기사가 아이에게 야한 동영상 보여줬는데, 보여주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39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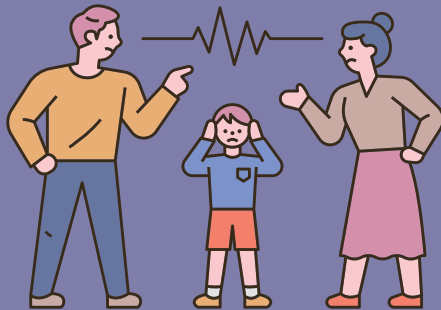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b>알아보기</b>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42
<b>알아보기</b>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	44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46
Q2. 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47
Q3.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48
Q4.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49
Q5.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49
Q6. 신고의무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
Q7. 누가 신고했는지 학대 행위자에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50
Q8.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51
Q9. 괜히 신고했다가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요?	52
Q10. 피해 아동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3
Q11.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말아야 할까요?	54
Q12.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4

PART



# 아동학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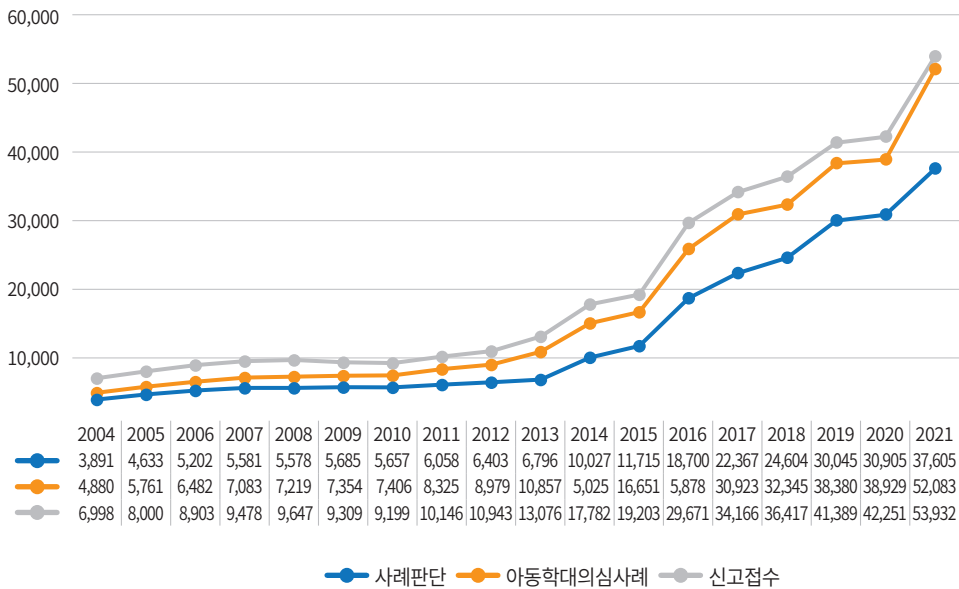


##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53,932건) 2020년(42,251건) 대비 신고 접수 건수가 27.6% 증가하였고, 2004년(6,998건) 대비로는 670.7%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96.6%(신고건수 53,932건/아동학대 의심사례 52,083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였습니다.

그림 1 연도별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출처: 실천교육교사모임, 2021 아동학대 신고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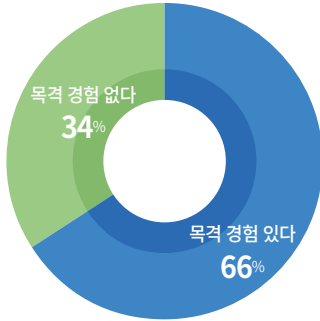


그림 2 아동학대 목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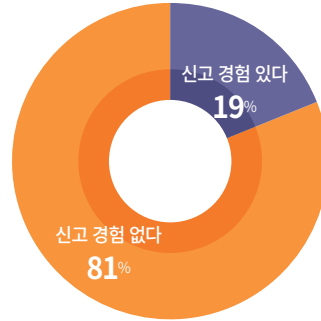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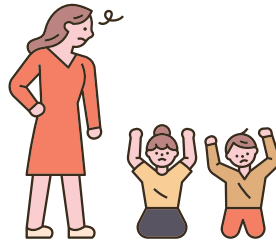


그림 3 아동학대 신고 경험

이렇게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실제 신고를 한 사람은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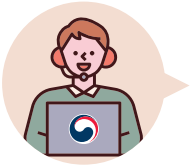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율을 높인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신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Q1

## 아동학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7호).

이때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호).



### 더 알아보기

#### 보호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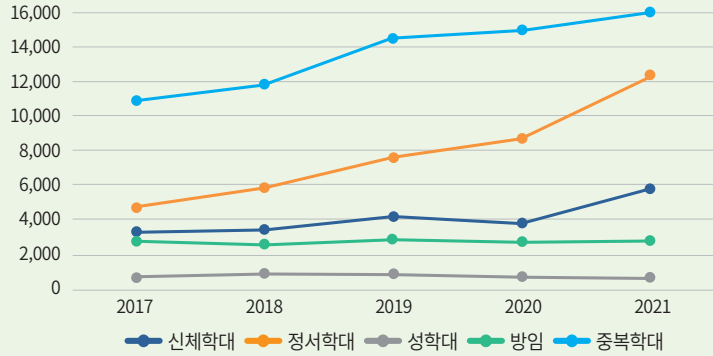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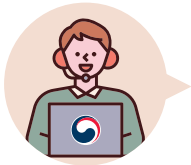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개년 연속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Q2

##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한 두 대 정도 때릴 수도 있지 않나요?



### 훈육과 학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것”입니다. 훈육의 방법에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맞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때릴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4705 판결

피해아동의 친부와 재혼한 계모인 피고인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입 주변을 몽둥이로 때린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단234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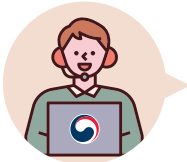
아동의 친부가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스티커를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와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기마자세를 취하도록 벌을 준 다음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책의 모서리로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합374판결

친부가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 아동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때린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신체적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Q3

## 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는 아동학대이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합374 판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PART



## 사례로 알아보는 아동학대



※ 본 책자의 사례는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소개된 사례와 유사한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입니다.

### 0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

### 0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0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0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05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알아차리기

## 01 신체학대

-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듯한 자국
- 체벌도구(회초리, 다리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 대부분의 화상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음
- 겨드랑이,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02 정서학대

- 발달지연 및 신체발달 저하
- 행동장애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 언어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및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양육자와 접촉에 대한 두려움, 귀가거부

## 03 성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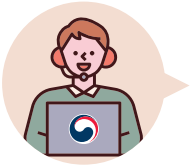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및 생식기, 항문 등의 상처
- 연령대와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 (성놀이)을 보임
-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음, 자책행동
-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이나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상호관계

## 04 방임

- 발달장애 및 성장장애, 영양실조, 위생 상태 불량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또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발견될 경우
-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음
- 음식을 구걸, 도벽, 잦은 결석,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감 호소
- 학교에 지나치게 일찍 등교하거나 집에 늦게 귀가함

# Q1

## 아이가 있을 때 부부싸움을 하면 안된다고요?



### 네. 맞습니다.

아동이 보거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568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양육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집안을 어지럽히며 다투었고, 피해 아동들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싸우는 소리를 피해자들이 들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양육 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Q2

## 볼일이 있으면 아이를 두고 외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어린 아동을 집에 홀로 두고 오랜 시간 외출하는 행위는 아동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640 판결

피고인이 자녀인 3세, 2세, 3개월의 어린 피해 아동들만 집에 남겨둔 채, 1시간 40여분, 5시간 30여분 동안 각각 집을 비운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학대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33 판결

피해 아동(10개월)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피해 아동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남편의 퇴근 시간 즈음에 집을 나간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아동을 홀로 차 안에 방치한 경우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친딸인 피해 아동(9개월)이 잠이 들자 피해 아동을 카시트에 그대로 둔 채 근처 PC방에 가서 2시간 20여 분 동안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625 판결)

### 아동을 집에 홀로 두고 가출한 경우

피고인이 외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하여 피해 아동(8세)을 출산하고 남편이 외국인보호센터에 수감되면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의식주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58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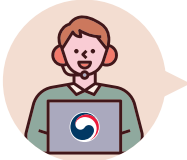
### 이혼 후 친부의 거주지 주변에 아이들을 놔두고 온 경우

이혼한 양육권자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양육한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혼자 키우던 중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 아동(5세)을 친부의 주거지 근처에 두고 와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친부의 거주지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도로변 수로에 피해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4399 판결)

# Q3

화가 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부셨어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건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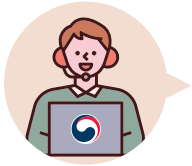
### 부산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82 판결

피해 아동이 휴대폰을 2-3번 정도 잃어버렸는데 또 다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많이 잃어버려서 핸드폰이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깨뜨린 사안에서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Q4

**남편이 미워서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동에게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아동에게 “아빠가 싫다”라는 말을 하게 하는 행동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원망적인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시키는 것 등은 모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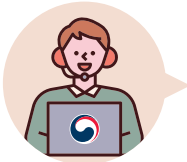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고단1079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 팔의 멍을 보여주며 “너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 거다. 너네 아빠는 개××, 미친 ×이다”라고 말하는 등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이 죄책이 무겁다 보고, 신체적 학대와 경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Q5

**아이 버릇을 제대로 고치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훈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동이 잘못하였다고 하여 집 밖으로 쫓아내고, 주거지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거지에 장기간 돌아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방임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200 판결**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였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때려 집 밖으로 쫓아내고, 주거지 현관의 비밀 번호를 바꾸는 등, 겁을 먹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약 1달 동안 주거지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끼니를 거르고 인근 옥상 등에서 숙박을 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임 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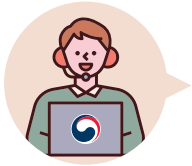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장기간 아동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경우**

약 3년 간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없이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이 보호받고 위안을 받아야 할 주거라는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원하는 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관념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963 판결)

# Q6

**남편이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동에게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발생한 학대를 목격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2202 판결**

피해 아동의 친부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상처를 입게 하고, 친모는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의 친부에 대하여는 신체적 학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친모에 대하여는 아동유기·방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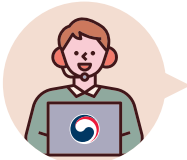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와 격리시키지 않은 경우**

아동이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와 격리시키거나 피해 아동을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와 경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고단1461 판결)

# Q7

## 아이에게 함께 죽자는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요?



### 이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자살을 암시하고 같이 죽자고 한 행동은 아동의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4 판결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언동을 보인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은 친모의 과격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으며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 자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

법원은 친부가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말하며 자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 준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0. 선고 2018고정135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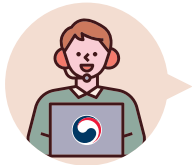
#### 화가 나서 손목을 긋는 시늉만 한 경우

부부싸움을 한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 아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고단2026 판결)

# Q8

**아이의 뺨을 딱 한 번 때렸는데,  
지속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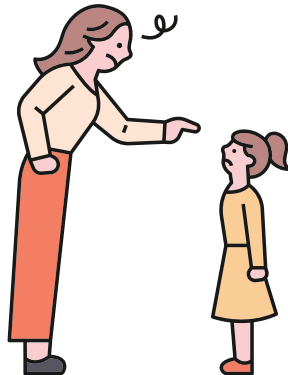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뺨을 단 1회 때린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노5138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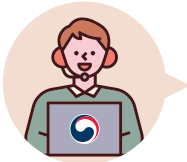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방임, 폭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Q9

##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주고 춥게 지내도록 한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보일러가 기름이 떨어져서 작동하지 않는걸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겨울 내내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생활하며 찬물로 씻도록 하고 옷도 주지 않는 등의 방치하는 행동은 방임으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178 판결

피해 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이 집에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기름을 넣어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들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방 안에서 차가운 물로 씻으면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보일러 수리를 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보일러 없이 겨울을 나게 하고, 의류를 주지 않고 교통비를 주거나 학교에 데려다주지 않아 돈이 없을 때는 걸어 다니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금품유용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집 안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둔 경우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집 안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 피해 아동들을 방치하고, 목욕, 양치 등 피해 아동들의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들이 학교에서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이 식사로 빵이나 과자를 먹거나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고, 피해 아동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치과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약물 제공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고 방치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임을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와 경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고단1473 판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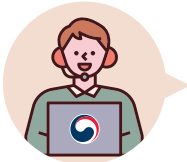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텔 등지에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피해자에게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세면도구 등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 아동들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1637 판결)



# Q10

##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학교에 안보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초·중등교육법」 제12조)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동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1467 판결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아동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등교 거부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6세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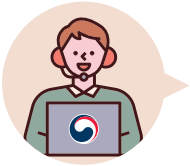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경우**

피고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내지 않아 학교에서 피해자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피해자들이 무단결석한 일수가 비상식적으로 많고 피해 아동 중 1인은 이미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적이 있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결석기간 동안에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체교육을 시킨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적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6027 판결)

# Q11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요?**



## **이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적 상태에 맞추지 않고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아동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위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아동에게 해주어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학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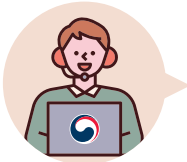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6311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면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피해 아동(1세)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하고 피해 아동이 양손을 들어 안아 달라고 할 때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Q12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머리와 몸을 누르는 정도는 재우기 위한 것이니까 학대는 아니지요?



##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중 잠을 재우려고 강제로 몸을 누르거나, 기저귀를 갈 때 혹은 식사를 강제하기 위해 수 차례 두드리는 것도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100 판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들(만 1세 전후의 영아)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아래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 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발바닥을 3회 가볍게 두드리거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입술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수 회 두드리거나 이마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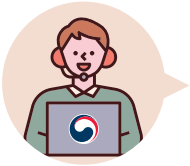
### 신체적 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는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신체의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신체의 손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외적·내적 손상과 함께 모발의 현저한 손상과 같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현저한 신체의 외형적 손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100 판결)

# Q13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장난을 쳐서  
아이의 볼을 잡았는데 손톱자국이 남았어요.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학대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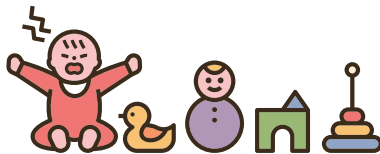
아동의 신체에 손톱자국이 남도록 한 것은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을 훈육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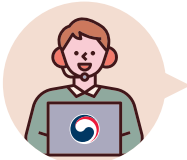
## **대전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정64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방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고 있는 다른 아동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자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볼을 잡아 손톱자국이 생기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Q14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기에  
훈육을 위해 교구장 위에 아이를 앉혀놨어요.  
훈육을 위한 것인데 학대가 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아동을 교구장 위에 앉혀 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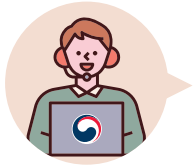
### 판례

#### 대법원 2020.3.12.선고 2017도5769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4세인 피해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 아동의 몸을 잡고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 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Q15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안 좋은 버릇을 고쳐주려고  
낮잠 시간에 자는 대신 서서 반성하도록  
한 것은 훈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아동을 강제로 재우지 않는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 판례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2648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음식물을 입에 물고 있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점심을 먹은 후 이를 삼키지 않자 약 1시간가량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워 놓고 낮잠을 재우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일주일동안 잠을 줄이면서 성경책을 암기하도록 한 경우**

컴퓨터 타자 테스트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1주일 동안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성경책 암기를 강요하고 성경책을 수십 회 반복하여 쓰게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와 경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355 판결)



# Q16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이들 낮잠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을 기본적으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동들을 관리하지 않고 약 40분가량 자리를 비우는 것은 피해 아동을 방임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 선고 2015고단1425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울며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고, 피해 아동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밀고 낮잠을 자는 40여분 동안 피해 아동들을 관리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임을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와 경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Q17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  
교실 밖 복도에 있도록 하는 것도 안 되나요?



## 네.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복도에 내보내고 장시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을 방임한 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방임행위를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로 이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1137 판결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시 25분경 피해 아동을 복도로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시경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보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경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Q18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주려고 엉덩이를 볼펜으로 쿡쿡 찌렀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볼펜으로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행위는 얼핏 가벼운 신체적 자극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처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장애로 인해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노3714 판결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9세, 지적장애 2급)이 다른 친구를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4~5회 찌른 사안에서 법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피해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으며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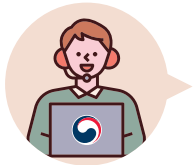
##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민 경우

보육교사가 평소 정리정돈이 늦고 활동 수업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아동의 얼굴을 민 것을 비롯하여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머리를 미는 방법 등 총 1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1458)

# Q19

다른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안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하고 겁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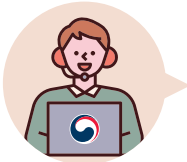
## 춘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355 판결

보육원 원장인 피고인이 원생들을 마당에 집합시켜 한 원생을 부러진 빗자루 막대 부분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애처럼 된다, 조심히 살아라”라고 하여 겁을 준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와 경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Q20

수영강사가 호흡법을 알려주면서 아이를 강제로 물속에 넣은 것은 강습을 위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동을 억지로 물속에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호흡 곤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수영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4536 판결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생존수영 교육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호흡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초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또는 머리를 잡고 억지로 물속에 넣은 사안에서 법원은 만 9세였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억지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호흡에 곤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적·육체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평생 또는 일시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 수영강사가 아이를 물속에 넣고 약 3초간 눌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밀친 경우

피고인이 수영 강습 중 피해 아동(7세)이 발차기 연습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장난을 하자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머리를 물속으로 넣고 약 3초간 눌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어깨부위를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피해 아동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집어 던지듯이 난간에 앉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6. 8. 선고 2017고단2404 판결)

# Q21

피아노 학원에서 박자를 맞추도록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쳤는데, 교습을 위한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박자를 맞추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아동의 등 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 저해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고도 용인한 것이면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정1924 판결)



판례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 1962 판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8세의 피해 아동이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박자를 맞추면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의 미신고 교습소 운영에 관한 점과 경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Q22

통학버스 기사가 아이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보여주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아동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판례

### 광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1108 판결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통학버스 안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PART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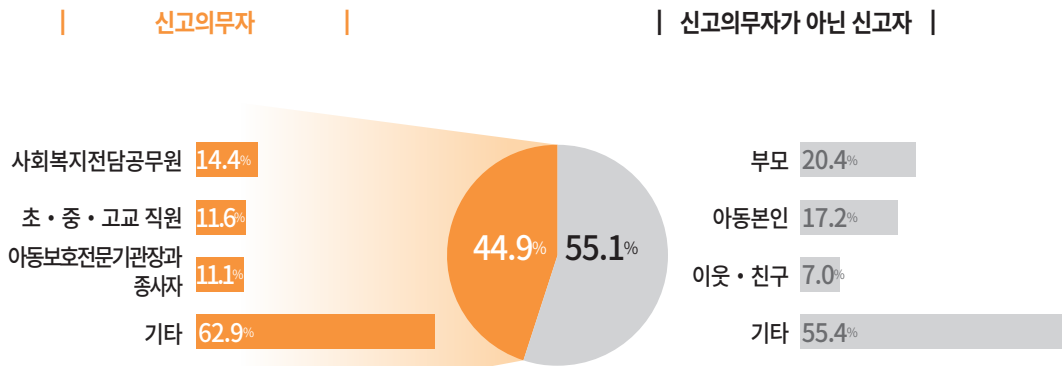
## 알아보기

#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4.9%(23,372건)였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인 55.1%(28,711건)는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4.4%(7,493건), 초·중·고교 직원 11.6%(6,065건),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1.1%(5,78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부모 20.4%(10,631건), 아동 본인 17.2%(8,966건), 이웃·친구 7.0%(3,66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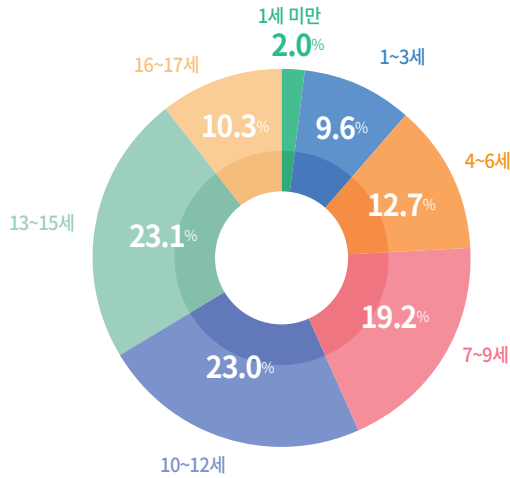
그림 1 아동학대 신고비율 및 신고자 유형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그림 2 피해아동 연령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피해 아동의 연령은 만 1세 미만이 2.0%, 만 1~3세가 9.6%, 만 4세~6세가 12.7%, 만 7~9세가 19.2%로, 만 9세 이하 피해 아동이 절반에 가까운 총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스스로 학대를 당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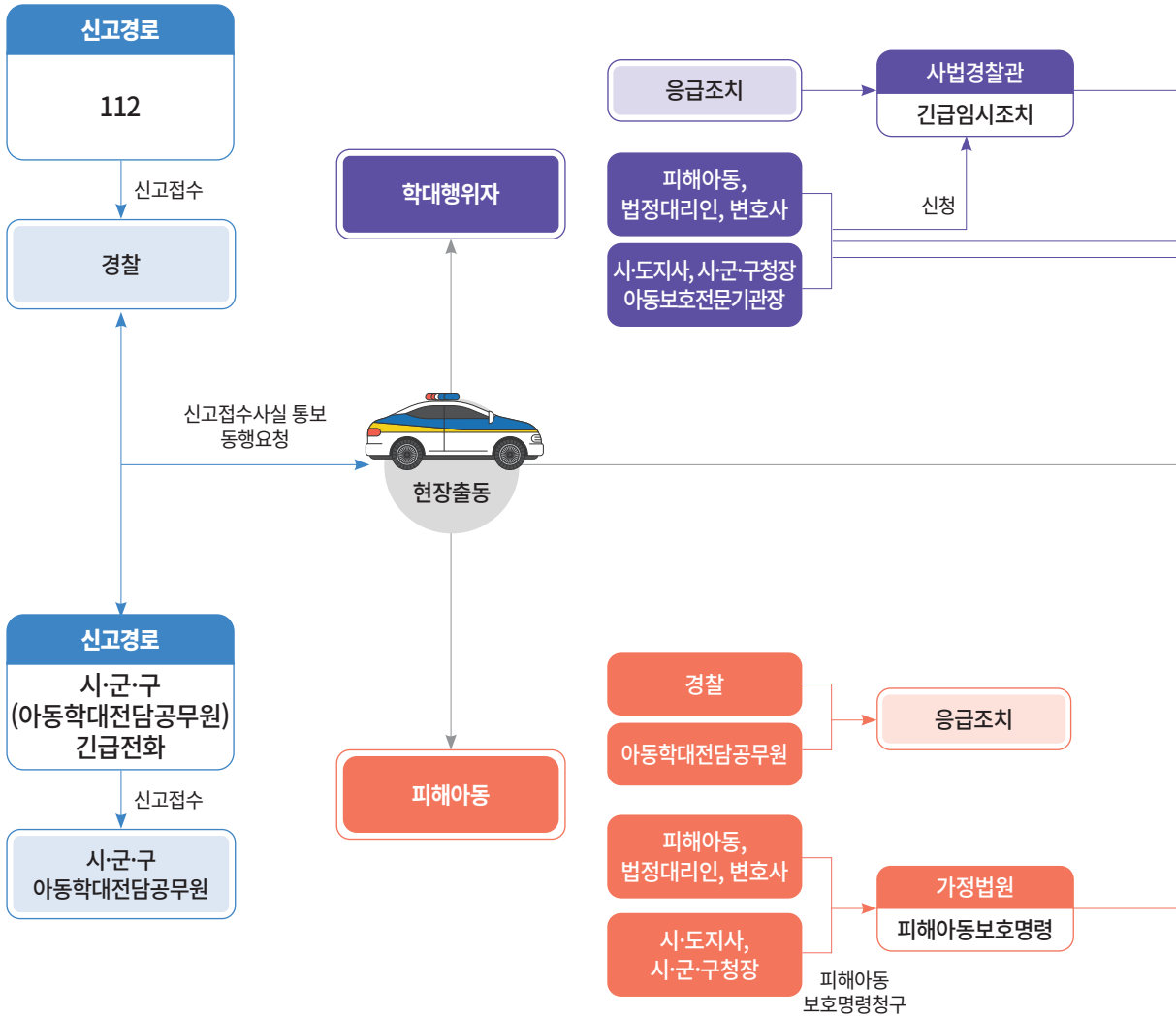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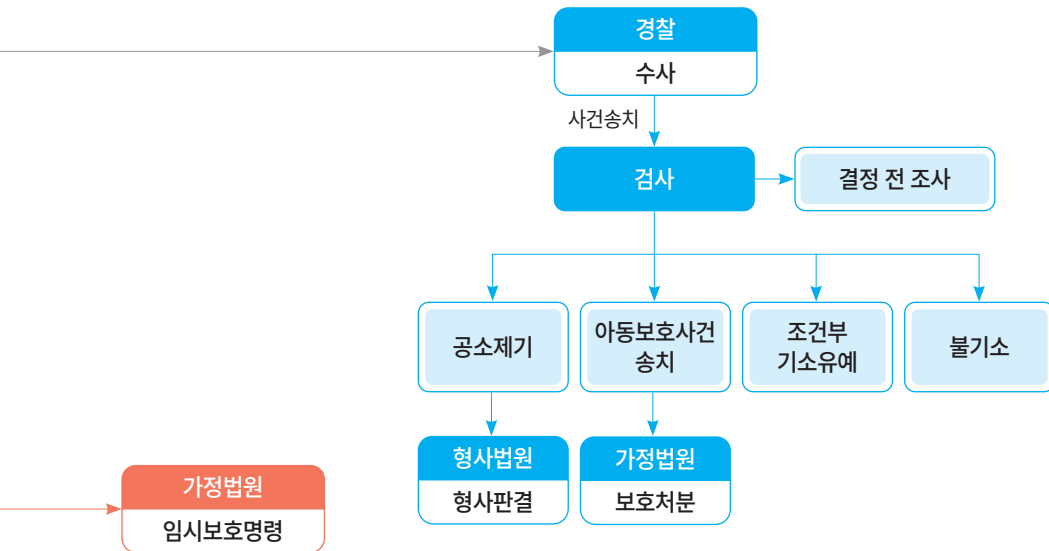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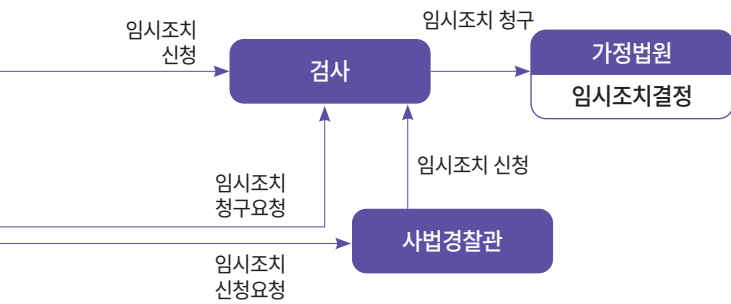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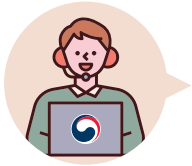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사법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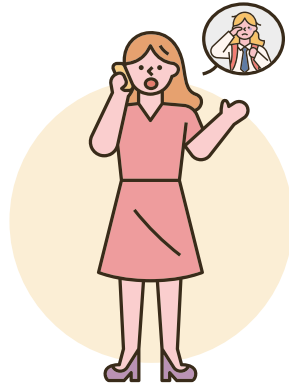
# Q1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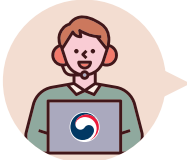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예방하고자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의심 사례를 신고하도록 한 것을 뜻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Q2

## 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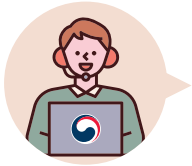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고의무직군이 규정되어있으며, 신고 의무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li> <li>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외)</li> <li>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li> <li>아동복지전담공무원</li> <li>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li> </ul>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건강가정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다문화가족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한부모가족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전담공무원</li> </ul>
사회복지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li> <li>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li> <li>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9구급대의 대원</li> </u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li> </ul>
영유아보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li> <li>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li> </ul>
유아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 교습소의 교습사·직원</li> </ul>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li> </ul>
청소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청소년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li> </ul>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아이돌봄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보미</li> </ul>
입양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li> </ul>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Q3

##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신고해야 하는데, 기관의 장이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 학대여부 확인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즉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동학대의 의심을 발견하고 여러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1~2시간 정도 신고가 지체된 경우
- ② 피해 아동을 우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신고한 경우

#### 근무시간 중이라서... 근무 끝나고 신고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시점이 근무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 ‘즉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4

##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



국번없이  
**112**

지자체 긴급전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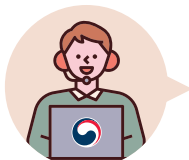
아이지킴콜어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

# Q5

##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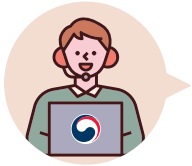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자의 성명, 아동과의 관계 등)
- ②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정황, 아동이 안전한지 여부 또는 응급조치 필요 여부 등
- ③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연락처 등
- ④ 아동학대 가해자(의심자)의 인적사항(성명이나 아동과의 관계 등)

# Q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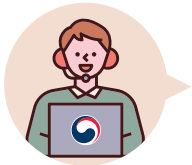
## 신고의무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Q7

## 누가 신고했는지 학대 행위자에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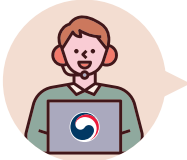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 범죄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에 대한 내용(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8

##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더 알아보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Q9

## 괜히 신고했다가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2, 제10조의2).



### 더 알아보기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Q10

## 피해 아동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아동은 응급조치(제지, 격리, 인도, 치료 등)와 보호조치(상담·지도,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합니다.
- 격리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합니다.
- 인도 :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치료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상담·지도
- 친족의 가정에서 보호·양육
- 가정 위탁하여 보호·양육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 Q11

##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말아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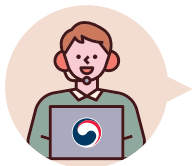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는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8조).

피해 아동이 보복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피해 아동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Q12

##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률 소개

법률명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li> <li>-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li> </ul>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li> </u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li> </u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li> </ul>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보호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li> </ul>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li> </ul>



# 아동행복 지금바로 LAW



---

인쇄 · 발행일	2022년 10월 28일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국 보호정책과 02-2110-3322
연구책임	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최보선
공동연구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유다혜, 손정은
자문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현호
감수	윤익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혜정
디자인 · 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